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66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위성곤·문대림·김기표

채현일 · 강준현 · 김성회

허 영·박민규·주철현

오세희 • 최민희 • 이해식

이광희 • 이워택 • 안호영

김남근 • 양부남 • 문금주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시 기존의 4개의 시·군(제주시, 서 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 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권한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 제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 체제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

해 지역사회에서는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 1조 및 제2조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 명칭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동, 일도2동,
동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제주특별자치도의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서제주시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
	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특별자 치도지사는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이하 "신설시"라 한다)의 시장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한다.
 - ② 신설시의 의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별로 "해당 신설시"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규정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 치도 신설시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의원 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도의회 또는 신설시 의회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 및 제10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본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 신설시의 시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에게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주특별자 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 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 이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조례·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나 규칙은 신설시의 조례나 규칙이 각각 제정될 때까지 해당 조례나 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 중 법령에 따라 신설시의 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각각 제 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 또는 신설시의 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신설시의 조례나 규칙 제정을 위하여 행한 각종 절차 등은 신설시와 신설시의회에서 진행한 절차 등으로 보며, 그 효력은 신설시와 신설시의회에 귀속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나 전부를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각각 신설시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7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소속의 공무원은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소속으로 공무 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공무원 채용사무는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신설시가 승계한다.
- 제8조(읍·면·동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읍·면·동(洞)은 각각 제2조에 따른 관할 구역에 속한 신설시에 설치된 읍·면·동(洞)으로 본다.